

## 통일문제연구소 규정

### 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명칭) 본 연구소는 호서대학교 부설 통일문제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2조 (목적) 조국통일에 관한 제반문제에 대한 학술적인 조사연구, 학생들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계도사업의 전개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3조 (사업) 본 연구소는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
1. 통일 및 이념교육에 관한 학술적 연구
2. 국내외의 자료수집 및 비치보관
3. 학술세미나 및 공개강연회의 개최
4. 통일 및 이념교육연구를 위한 정부 관리기관과의 상호 협조
5. 기타 연구소 목적에 부합한 사업

### 제 2 장 구 성

제 4조 (위원) 본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둔다. (개정 2015.09.01.)

1. 소 장 : 1명
2. 연구위원 및 운영위원 : 약간 명

제 5조 (위촉) 본 연구소의 소장은 총장이 위촉하고 연구위원 및 운영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15.09.01.)

### 제 3 장 재 정

제 6조 (재정) 본 연구소의 재정은 각종 연구보조금과 기부금 및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. (개정 2015.09.01.)

제 7조 (회계연도)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제 8조 (폐소) 본 연구소가 폐소할 때에는 잔여 재산을 본교에 귀속시킨다. (신설 2015.09.01.)

### 제 4 장 기 타

제 9조 (보고) 연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때 보고는 연구소 관리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. (신설 2015.09.01)

1. 연구소 운영실적보고서 - 다음해 3월말까지  
(해당 학년도 연구비 수혜상황 및 연구실적 총괄표 포함)
2. 매 회계연도 결산서 - 다음해 3월말까지
3. 신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- 1월말까지
4. 기타 연구소와 관련된 자료

### 제 5 장 보 칙

제10조 (준용) 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(신설 2015.09.01)

제11조 (운영세칙) 기타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(신설 2015.09.01)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